최종합격자 발표 공고

고양산업진흥원 2022년 제1차 기간제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7일 고 양산업진흥원장

1. 최종합격자 명단

분야	모집	부문	합격자	휴대전화 (뒷번호 네자리)
1	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운영		김 〇 연	6708
2	고양중장년기술창업센터 행정매니저		김 🔾 영	3779
3	28청춘창업소	총괄매니저	박 〇 훈	0382
4	20%で% 音至	행정매니저	이 〇 주	8109
5		컨설팅 • 사업운영	〈합격자 없음〉	
6	고양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	사업운영	박 () 연	9214
7		운영지원	박 ○ 인	9149
8	고양이쿠이특수촬영스튜디오 운영지원		최 〇 주	5751
9	대체인력		우 〇 정	5814

2. 임용후보자 등록 및 서류 제출

○ 등록기한 : 2022. 1. 12.(수) 14:00까지

※ 임용예정일 2022. 1. 17.(월)

○ 장 소 : 고양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

※ 주소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빛마루 14층

- 등록방법 : 방문 또는 우편 제출
- 제출서류
 - 1)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원서(붙임 서식1) 1부.
 - 2) 경력증명서(응시원서 작성 사항 전체) 1부.
 - 3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조회조건 직장가입자) 1부.
 - 4) 학력증명서(대학교(또는 고등학교) 이상 전체) 각 1부.
 - 5)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(응시워서 작성 사항 전체) 각 1부.
 - 6) 주민등록등본(상세) 1부.
 - 7) 주민등록초본(상세) 1부.
 - 8) 가족관계증명서 1부.
 - 9) 공정채용 확인서(서식 2) 1부.
 - 10)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(서식 3, 서식 4) 1부.

3. 유의사항

- 제출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합격자 본인 및 세대원 전체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함
 - 1.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
 - 2.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사람
 - 3. 「고양산업진흥원 인사규정」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

【 진홍원 인사규정 제20조(결격사유)】

- 1. 미성년자
-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3.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「병역법」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
- 5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
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, 임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
- **4. 문의** : 경영지원팀(031-960-7816) 끝.

신규임용후보자 등록원서

·성 명: ·생년월일:

상기 본인은 고양산업진흥원 2022년 제1차 기간제 직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규임용후보자로 등록합니다.

※ 구비서류

- ① 경력증명서 각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- ③ 학력증명서 각 1부 ④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(소지자에 한정함)
-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주민등록초본 1부
-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⑧ 공정채용 확인서 1부
- ⑨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

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공정채용 확인서

성 명:

생년월일 :

상기 본인은 고양산업진흥원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,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.

- 1.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(이하 '본인 등')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
- 2.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
- 3.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·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
- 4.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

년 월 일

서약자 (서명)

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·성 명: ·생년월일:

상기 본인은 고양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회·열람 결과 결격사유 해당 전력이 없습니다.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취소, 임용취소 또는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.

연	결 격 사 유	조회 방법	조회	결과
번	실 수 사 ㅠ	조의 경험	해당없음	해당
1.	미성년자	신분증		
2.	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	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		
	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	법원 나의 사건검색		
	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제3호부터 제6의 4에 해당 하는 자	경찰청 범좌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		
	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7호부터 제8호에 해당 하는 자	공공기관 근무 경력자의 경우 〈서식2〉 작성		
3.	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		
4.	「병역법」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	남성의 경우 민원24 병적증명서 발급		
5.	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	공공기관 근무 경력자의 경우 <서식2> 작성		

년 월 일

확인자 : (서명 또는 인)

결격사유 조회방법 안내

조희 방법	확인방법	확인내용
○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https://egdrs.scourt.go.kr/	인터넷 발급	1.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2. 공인인증서 로그인 3. 설정사항 - 발급사유 : 기타 - 신청내용 : 일부사항증명-성년후견 3. 증명서 상 "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에 관한 등기사항 부존재함" 확인시 해당 없음
○법원 나의사건검색 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inform ation/events/search/search.jsp	인터넷 조회	1. 나의사건검색 - 인증서로 검색 2. 공인인증서 로그인 3. 설정사항 - 법원명 : 전체(최하단) - 사건종류 : 회생파산 4. 조회결과 없는 경우 해당없음
○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://crims.police.go.kr/	인터넷 발급	1. 본인발급/열람 - 수사자료표 2. 공인인증서 로그인 3. 설정사항 - 회보서유형 : 개인범죄수사경력(통합) - 조회목적 : 실효된 형 등 포함 - 회보방법 : 열람 4. 회보서 열람 - 조회결과 "해당자료없음" 의 경우 해당 없음
○ 민원24 병적증명서 발급 ※ 남성에 한함	인터넷 발급	 정부24 - 병적증명 설정사항 군(대체)복무 구분 : 군필자는 복무를 마친 사람, 미필은 복무를 마치지 않음 사람 설정항목 전체 "기재"로 설정 군필자는 "해당 없음", 미필자는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불가
○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※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에 한함	[서식2] 작성	1. 사전확인사항 확인 2. 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

※ 상기 결격사유 확인서류는 임용후보자 본인확인용으로 진흥원으로 제출 불요

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고용 시 **사전 확인사항**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<u>비</u>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,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및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고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- 1. 공공기관 재직 경력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
 - ※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재직한 사실 없으면 추가 확인 불필요
 - ※ 공공기관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
 - 가.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
 - 나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감,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
 - 다. 「국회법」에 따른 국회, 「법원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법원, 「헌법재판소법」에 따른 헌법 재판소,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감사원
 - 라. 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
- 2. 공공기관 재직 경력 있을 경우, 해당 기관에 비위면직자등('공직자로서 재직중 부패행위'로 당연퇴직·파면·해임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) 해당 여부 및 '퇴 직일 또는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' 여부 확인
 - 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

「국가공무원법」및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- 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 -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-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 -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 재직 경력이 있을 경우

아래 체크리스트(확인서)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-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작성용 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 비위면직자등은 <u>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</u>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<u>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</u>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	_	_	_
<해당되는	무하	□레	체コン

1. <u>공직자</u>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・임용・교육훈련・복무・보수・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<u>부패행위</u> 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
 ※ 부패행위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・관리・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<u>부패행위 비해당</u>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・여비 부당수령 → <u>부패행위 해당</u>
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 된 사실이 있는지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</u>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
. 리시그리의 아니 에러/보리하다리아시시아 원호하는 원호의 원호를 만든 원호를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
[27] [72]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

확 인 자

(서명)